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1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세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용부분 보수범위 및 사업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담양군의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,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적용범위(안 제3조제4항제2호)

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차별로 분할하여

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→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나. 지원결정 및 정산(안 제7조제4항)

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~95%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지원하되
사업별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→ 6천만원으로 한다.

다. 지원결정 및 정산(안 제7조제12항)

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최초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.

1. 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 3천만원
2. 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 5천만원
3. 200세대 이상 : 6천만원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1. 10. ~ 11. 1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연차별”을 “순차적으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천만원”을 “6천만원”으로 하고,
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최초
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.

1. 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 3천만원
2. 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 5천만원
3. 200세대 이상 : 6천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<u>연차별로</u>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	2. ----- <u>순차적으</u> ----- -----
제7조(지원결정 및 정산) ① ~ ③ (생략)	제7조(지원결정 및 정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~95%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<u>5천만원</u> 으로 한다. 다만,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아니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6천만원</u>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~ ⑪ (생략)	⑤ ~ ⑪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⑫ 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차
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
만, 최초 지원되는 공동주택은
적용하지 않는다.

1. 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
3천만원

2. 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
5천만원

3. 200세대 이상 : 6천만원